

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개요

◆ 의료법 시행(‘20.2.28)에 따라,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4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)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를 위탁하고,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(KHCERT*)를 구축·운영

* KHCERT(Korea Healthca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)

□ 설립 및 운영 근거

- 의료법 제23조의4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)

제23조의4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파
 2.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·경보
 3.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
 4.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·분석
 5.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4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)

□ (대응센터 업무) ① 24시간·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접수, ②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, ③사고조사 및 복구지원, ④교육·훈련 등

- (통지접수)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한 사고통지 및 접수

※이메일: cert@khcert.or.kr, 상담전화: 02-6360-6500(KHCERT 상황실)

□ (위탁기관) 사회보장정보원

